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02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김태선·박 정·허종식
박해철·박민규·김우영
허 영·한민수·김준영
김교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경보·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경보·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의2(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 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 보 · 경보 · 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 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u> <u>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u>	2.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 <u>른 기상현상</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자연재난</u>	<u><삭 제></u>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